

두나무(주)의 규제 개선 요청

두나무(주)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- 다 음 -

1. 상호 : 두나무(주)

2. 법령정비 내용

-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매매 주문의 접수·전달 업무 영위 근거를 마련*

* 비상장주식을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으로 매매체결하는 투자중개업 인가단위 신설 예정

3.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

-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.

4. 부가조건

- 혁신사업자의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혁신사업자의 보고의무사항 이행 등 관계법령 및 부가조건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·확인토록 내규를 개선하고
- 내부통제 전문인력 부재 시 즉시 전문성을 갖춘 대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보완·강화

⇒ '24.6.30일까지 각 부가조건 이행 후 금감원 보고

5. 결정일 : 2024. 3. 20.